

개정 전	개정 후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(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년)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</u></p>

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33조의3제4항 • 제5항, 제34조제8항 • 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: 공포한 날

제2조(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

- ② 제33조의3제4항 • 제5항 및 제34조제8항 •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